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54 회)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7년 2월 일

조례 개정 방침결정문

1. 조례명 :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2016.1.12.)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결산검사 사항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조례개정안 : 별첨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6. 관련법규 : 별첨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7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 의원” 을 “의원” 으로, “검사위원” 을 “위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에 따른 위원” 을 “위원” 으로, “도의회” 를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 라 한다)”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겸임금지 및 결격)” 을 “(겸임금지와 결격)” 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 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제8조 중 “교육감 및” 을 “교육감과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도지사 및” 을 “도지사와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4조제2항에 의한” 을 “제4조에 따른” 으로
하고, “실제로 검사” 를 “결산검사” 로 하며, “검사의견서를
제출한 날” 을 “결산검사 종료일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6.1.12.>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